

## 연구교수 임용규정

제정 : 2021. 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연구교수라 함은 본 대학교 학과(학부), 대학원, 부설연구기관 및 부속기관 등에서 연구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연구에 종사할 교원을 말한다.

**제3조 (임용자격)** 연구교수 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 혹은 전문영역에서 그 업적이 탁월한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일정 수준의 연구실적 및 경력을 갖춘 자.
3.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 하는자.
4.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의 규정에 의해 위촉하는 자.

**제4조 (임용절차)** ① 연구교수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학협력단 교외 연구과제 참여를 위하여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연구교수는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이 연구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교수 임용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이력서 기재상의 증빙서류 포함)
3.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4. 연구교수 활용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5. 연구실적물 및 연구실적목록 1부
6. 주민등록 초·등본 각 1통

**제5조 (임용기간)** ① 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다년도 과제인 경우 평가에 의해 연구과제 종료일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연구교수는 임용기간 중이라도 연구과제가 종료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연구교수는 임기가 만료되면 별도의 해임발령 없이 당연 퇴직한다.

**제6조 (신분 등)** ① 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학칙 제66조 및 교원인사규정 제2조와 계약제초빙교원·석좌교수인사규정에 의해 초빙교원으로 한다.

② 연구교수는 연구사업수행을 위해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전공관련학과 소속으로 겸직할 수도 있다.

**제7조 (의무)** ① 연구교수는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

② 연구교수는 다른 대학에 출강할 수 없다. 단,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연구교수는 교육 관계법령 및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연구교수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실적 발표)** ① 연구교수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연구실적을 발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소속의 연구교수임을 밝혀야 한다.

② 연구실적물을 발표하였을 경우 논문게재 장려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지원 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에서 지급한다.

**제9조 (연구결과물의 소유)** 연구교수가 연구과제 수행 중 발생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대하여 본 대학교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보수 등 처우)** ① 연구교수의 보수는 계약에 의해 수탁연구과제 연구비 재원으로 한다.

② 연구교수 보수 재산정은 매년 연구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진행한다.

③ 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강의를 담당(최대 6시수 이내)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④ 연구교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연구교수는 도서관, 연구시설, 기타 교내 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⑥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에 의해 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면직)**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연구사업이 종료된 경우

2. 연구교수로서 제6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대학의 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기타 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에게 면직을 요청해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연구교수 임용추천서

인적사항	성 명		( )	생년월일		
	본직 기관	기관명		연락처	본직기관	
		직 위			휴대폰	
			이메일			
임용추천 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학 력	출 신 학 교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	전 공	학 위 명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석사				
박사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천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별지 작성도 가능)					

- 첨 부 1. 이력서 1부.  
2. 연구교수 활용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연구교수 임용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연구교수 활용 추천자)

㉠

우송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연구교수 활용 계획서

부서명					직급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강의 (* 6시간초과 강의할수 없음)	구분	학년도	학기	담당 교과목명	주당 시간수	학점
		대학					
		대학원					
	논문지도	논문 지도교수	(학생수)				
		논문공동 지도교수	(학생수)				
	연구	공동 연구자					
		과제명					
기타							
활용의 필요성	(구체적으로 작성 : 별지 작성도 가함)						

위와 같이 연구교수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연구교수 활용 추천자)

인

<서식 3>

연구교수 재임용추천서

부서명				직급			
인적사항	성명	( )			생년월일		
	본직기관	기관명			연락처	분직기관	
		직위				휴대폰	
				이메일			
재임용기간	20 . . . . .부터 20 . . . . .까지						
담당업무	강의 (* 6시간이상 강의할수 없음)	구분	학년도	학기	담당 교과목명	주당 시간수	학점
		대학					
		대학원					
	논문지도	논문지도교수	(학 생 수)				
		논문공동지도교수	(학 생 수)				
	연구	공동연구자					
		과제명					
기타							
활용의필요성	(구체적으로 작성 : 별지 작성도 가함)						

위와 같이 연구교수 재임용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연구교수 활용 추천자)

㉠

우송대학교 총장 귀하